

	회장직무대행
상근부회장	
고명훈	

2016년도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2016. 12. 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6년도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1. 일 시 : 2016. 12. 6(화) 16:00 ~ 19:0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회원 248명 중 193명 참석

가. 참석(193명)

- 개인회원(47명) : 홍연숙, 고태준, 안창준, 고관용, 고수희, 임주리, 고치환, 이동한, 원석철, 김금자, 김순효, 김문국, 양은정, 이승희, 정영태, 허철훈, 고정언, 한형범, 고두승, 전영록, 고경윤, 고봉식, 이연봉, 강규진, 김성진, 고경남, 박승석, 오운자, 임태봉, 고추월, 윤보철, 고태언, 조성태, 김여옥, 김군택, 함성중, 한윤정, 김수완, 고영봉, 양광호, 김상현, 송옥희, 강정민, 김희현, 박재천, 박주희, 고성도
- 단체회원(137명) : 아가의집(박두현), 홍익아동복지센터(김순실), 평안전문요양원(고수희), 성이시돌요양원(한승광), 서귀포시사랑원(김영성), 남제주요양원(김영진), 성요셉요양원(박명옥), 제주Y신협(여혜숙), 사회복지법인 춘강(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삼인원(김성민), 제주시희망원(김숙희), 제주정신요양원(박정해), 제주보육원(강지영), 제주양로원(신현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윤흥기), 천사의집(송선미), 제주원광요양원(강정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양예홍), 사회복지법인 유진(최은미), 평화의마을(남시영), 사회복지법인 삼다(양예홍),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양은심),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박춘근), 제주장애인요양원(정석왕), 은성종합사회복지관(김봉한), 보은의집(김영희),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조영숙), 소망요양원(고경애), 애서원(임애덕),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형중), 주사랑요양원(한영희), 제주특별자

지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문상익),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강옥련), 송죽원(김금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임태봉), 제광원(신성조), 어울림터(조인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강승희), 제주애덕의집(현성훈), 창암재활원(정은경), 아라종합사회복지관(조성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강철남), 가롤로의집(김정숙), 사회복지법인 동광원(부재옥), 세화요양원(안근보), 서귀포작은예수의집(박재형),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이상언), 위미에덴요양원(김상곤), 제주평화양로원(김재익), 예향원(홍영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김선희), 탐라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양예홍), 제주태고원(우영철), 일배움터(정춘진), 성안노인복지센터(김옥희), 제주시니어클럽(황영애), 사랑의집(김호성), 서부종합사회복지관(안원식),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윤보철), 제주작은예수의집(조효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박영재), 월드비전제주지부(정명화), 정혜재활원(이흥기), 제일지역아동센터(박영식), 경천전문요양원(윤조중),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윤두호), 야곱노인복지센터(고영란),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민숙), 제주케어하우스(홍영진),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김문국),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고현수), 성지요양원(송창권), 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강은숙), 춘강장애인근로센터(고성도), 효사랑(김은진), 우도샬롬소규모요양시설(박태식),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전재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양창오), 제주글로벌센터(오명찬), 아노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강미경), 창암교육활동센터(박영재), 성안복지재단(오덕철), 서호요양원(윤세찬),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임철남), 행복나눔장애인주간보호시설(백인협),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김효철), 전원요양원(고은애), 자광원(김정국), 함덕지역아동센터(명혜

속), 주사랑소규모요양원(한영희), 성진요양원(김순희), 한국노인
복지센터(전민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임태봉), 늘푸
른전문요양원(강진석),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안명희), 가족사랑
상담소(김명수), 미타요양원(김동화),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양지혜), 봉아름지역아동센터(임진희),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박
미란), 혜주원(이종석),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한
동휴),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김정숙), 동제주노인복지센
터(김명혜), 엘린(한봉금),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최덕수),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김정우), 사회복지법인 선도원(임말시
아), 벨엘(임주리), 마리아의 집(허정자), 나눔요양원(김옥순), 제
주사라의집(이상호), 기로회요양원(현미숙), 서부장래인복지센터
(안원식), 행복한쉼터(고지용),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
터(양예홍), 참좋은지역아동센터(황의식),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
요양원(신동운), 성가정노인복지센터(이정애), 성자현(진유신), 제
주여성장애인상담소(김경미), 비전지역아동센터(박명훈), 하소로
지역아동센터(오효선), 제주몽생이그급훈(김완숙), 신흥지역아동
센터(석건), 예천노인전문요양원(박전해),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
터(이재문), 제주수눔지역자활센터(고은택), 제주도농아복지관
(문성은), 하나원(김화옥), 여성의 쉼터 불턱(김희경), 보목지역아
동센터(양신낭),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김형자), 표선노인복지
센터(송은진),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현경훈), 평안재가노인복지
센터(송매옥),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김성자), 서귀포시노인복지
관(김재경)

※ 성명 밑에 밑줄이 있는 참석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해당
시설·단체의 임·직원임

나. 위임(9명) : 공성용, 김경수, 문정옥, 정영태, 강세현, 고보선, 강정금, 양복실, 양화규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후 부형종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회장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오늘 임시총회 의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하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기를 부탁하다. 또한 오늘 부의 안건에는 제7대 회장 선거가 있다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오늘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전차회의록 낭독을 지시하다.
- 양광호 회원 : 지난 정기총회시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었으며 특히 오늘 부의안건으로 회장 등 임원선출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별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이연봉 회원 : 정기총회 개최 일시가 2016년 1월 28일 목요일인데 회의록에 잘못 표기 되어있다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수정하겠다고 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질의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 개최일을 2016년 1월 28일 목요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처리 여부를 묻고 동의를 구하다.
- 회원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 수정안이 처리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제7대 회장 등 임원선임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회원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언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이상언 회원 : 회의자료 67쪽에서 2017년도 회원회비 수입을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회비는 평생회원 50만원과 개인회원 년 5만원, 단체회원 년 1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그런데 최근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체회원들에 대하여 법인 및 시설단체가 회원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은 법인단체 및 시설단체들이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표자 개인에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지금까지 단체회원들이 회원회비를 소속 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납부한 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또한 내년에 저희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이 회원이기 때문에 단체회원의 회비가 아닌 개인회원 회비 5만원만을 납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단체회원으로서 년 10만원을 납부해야 함으로 5만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다.
- 이상언 회원 :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단체를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을 회원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리라면 최근 1년간 새롭게 단체의 대표자가 바뀐 시설 단체들의 경우 오늘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저희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은 엄연히 다르게 생각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회원을 개인회원으로 만들고 있다며 고치환 후보의 피선거권도 단체회원자격으로 활동하기는 했으나 평생회원으로 가입한지 3년이 안되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다.
- 이상언 회원이 계속해서 자기주장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회원들이 항의하다.

- 임애덕 회원 : 총회에서 회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고 의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이 가능한 분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하다.
- 양은심 회원 :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금 제1호 의안은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하며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다가 제2호 의안 회장선거에 대한 질문을 해버리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며 일단 제1호 의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한 후 제2호 의안 회장선거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 이연봉 회원 : 이상언 회원이 질의한 내용은 회장선거와 관련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으로 일단 제1호 의안이 처리되면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제2호 의안에 대한 회의진행을 맡게 된다며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 의 장 : 회장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제2호 의안으로서 이연봉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그때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우선 제1호 의안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요청하다.
- 박정해 회원 :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심의과정에 있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며 원안처리를 동의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회원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다고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회장 등 임원선임안을 상정하다.

마. 의사진행 사항 제안

- 의 장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 제7대 회장 등 임원선임에 대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이연봉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다.

바. 위원장 인사

- 위 원 장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은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이사 중 5인으로 이사회에서 구성하는데 그렇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다.
- 제1호 의안 논의 중 이상언 회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이상언 회원이 질의를 다시 하고싶다고 요청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다.

- 이상연 회원 :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치환 후보가 회원가입 기간이 3년이 안되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라고 하다. 이 이의 제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과거 평안전문요양원 원장으로 있었던 단체회원의 자격을 소급적용 받아서 회원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 피선거권이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하다. 즉 단체회원의 대표자 개인이 회원이라는 논리로 답변을 해왔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단체회원의 회비는 10만원, 개인회원의 회비는 5만원으로 구분하여 받고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논리라면 모두 개인회원의 회비 5만원으로 회비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논리라면 현재 시설·단체의 대표자들이 교체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올해 교체된 시설·단체의 대표자의 경우 회비를 납부했다면 그 분들이 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 하다.

- 한형범 회원 : 선거사무는 공정해야 하는데 기호 1번 고치환 후보의 경우 평생회원에 가입한 날짜가 2013년 12월 12일로서 회원가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존 평안전문요양원 원장으로 회원가입 후 활동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 윤보철 회원 : 제가 발언을 하게된 이유는 1998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재창립 될 시기에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다.

먼저 그 당시 독립법인으로 재장립 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신데 좀 전 발언하신 한형범 회원께서도 그 발기인의 한 분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나 제규정 제정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신데 그 정관이나 제규정들이 잘못되었다고 발언하시는 모습에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된다고 하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언론인, 법조인 등의 개인들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대표자를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제주지역의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수가 많지도 않았고 또한 일반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아 회원을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 제주지역 여건상 회원구성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회원규정 등을 두어 개인과 단체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들이 창립총회에 반영이 되어 지금에 오고 있다고 하다.

또한 현재 고치환 후보의 경우 3년 전 평안전문요양원장으로서 제6대 회장에 당선되어 그 직을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시설의 대표를 그만두시고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그것은 연속성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위 원 장 : 이상언 회원이 제기하는 내용에 관해서 모 후보자측에서 이의제기 의견서가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를 해왔다고 하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회원관리를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고 하다. 하지만 단체회원이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법인이나 시설·단체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시설의 대표자가 회원인것이다. 이상언 회원 등이 시설·단체들이 회원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저희 정관과 회원규정 상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단체가 아

나라 그 단체의 대표자가 회원인 것이고 단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원관리 차원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들을 단체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면서 연회비 1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법인이나 시설·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연회비 5만원을 받고 개인회원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 하다. 또한 법인이나 시설·단체의 대표자이면서 개인회원으로 중복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동안 관련규정 등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의 책임도 있고 또 그 책임의 이면에는 회원을 한명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립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었던 욕심도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하다.

고치환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있는데 고치환 후보의 경우 평안전문요양원의 대표자로서 1998년 12월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창립할때부터 회원으로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활동해오다가 2014년 11월 1일 평안전문요양원의 대표자를 고수희 원장으로 넘겨주고 있다고 하다. 그리고 평안전문요양원의 원장을 그만두기 1년 전인 2013년 12월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여 1년여의 기간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중복이었다고 하다. 여기서 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 하자면 사회복지사업법상에는 개인회원이거나 단체회원의 구분은 없다고 하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편의상 관리차원에서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해온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치환 후보의 경우는 1998년 12월 평안전문요양원의 대표자로서 회원가입을 하여 활동해 오다가 2013년 12월 평생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치환 후보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다.

- 임애덕 회원 : 이연봉 선거관리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한다고 하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가 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복지법인 청수가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저 개인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지금까지 저의 회원회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납부를 하였는데 개인회원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예산으로 납부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다. 두 번째로 고치환 후보가 이전에 평안전문요양원의 대표자로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회원회비 납부를 평안전문요양원이 아닌 고치환 개인의 이름으로 회비를 납부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투표방법 안내라는 안내문을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이 어떻게 투표에 참가해야 하는지 꼼꼼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고 표결권 위임에 관한 내용 중 개인은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단체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좀전에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논리를 근거로 이 표결권 위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다.

- 위 원 장 : 임애덕 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상 사회복지법인이 회원이 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원의 회비납부를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닌것 같기는 하지만 질문이 있어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비용으로 회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공금횡령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하다. 다음의 질문인 의결권 표결권 대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급적 대리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본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부득이 본인 참여가 어려울 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명해 놓은 사항이라고 답변하다.

- 강전애 변호사가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위원장이 회원이 아니므로 발언할 수 없다고 하고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다.

- **한형범 회원** : 이연봉 선거관리위원장의 설명의 논리라면 단체회원 대표자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몇 명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회원도 개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직원에게 어떻게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다.

- **위원장** : 의결권과 표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되어진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고 하다.

- **위원장** :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선거와 관련 한 여러 가지 이의제기들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다. 이번 회장선거와 관련한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하고 당해연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다. 지금 현재 선거인 명부 상 순수하게 개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없지만 일부 단체회원들 중 시설의 대표자들이 변경되어 1년이 안된 회원들이 일부 있다고 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시설의 대표자가 바뀐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게 맞을것 같다고 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라는 것은 일반 개인회원이 회원가입을 한 후 1년이 경과한것과는

달리 이전 대표자에게 권한을 승계받았다는 의미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의견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다.

- **신동운 회원**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견이 있을때 가급적 한번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하는데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만 이야기 하는 것은 회의시간만 길어질 수 있다며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한번만 본인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하다.
또한 위원장이 설명한 선거인 명부 중 시설의 대표자가 바뀌지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선거권 부여 가부결정에 대하여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3(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에서 선거인 명부를 사전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고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 선거권자가 아닌 회원이 등재 되었다라고 했을때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람기간 아무런 의의제기가 없이 확정된 명단이므로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을 갖고 맞고 틀리다는 의견을 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진다.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는 회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위원장** :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 중 시설의 대표자가 바뀌지 1년 미만인 회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동의하는지 회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고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거수해 달라고 하다.

- 선거인 명부 등재 회원 중 시설의 대표자가 바뀐지 1년 미만인 회원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해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이 거수로서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다.

- 위 원 장 : 회원들의 동의로 인해 시설의 대표자가 바뀐지 1년 미만인 시설의 대표자들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하고 선거인 명부는 당초 열람기간을 거쳐 확정된 선거인명부대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하다.

- 위 원 장 :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투표진행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다. 우선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후 후보자별 소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소견발표는 기호 2번 임말시아 후보, 기호 1번 고치환 후보 순으로 진행하고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시작할 때 타종 1회, 종료 1분전 타종 1회를 하게되며, 10분이 초과할때에는 마이크를 끄겠다고 하다. 10분 초과시에도 발언이 계속 될 경우 강제로 중단 시키겠다고하다. 소견발표 후에 투표개시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투표소는 이곳 무대위에 준비 되어있다고 하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 한해 질서 정연하게 투표해 주시길 부탁하다. 투표종료시간은 투표개시 선언 후 1시간이며 투표종료시간까지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다. 투표종료 10분전, 5분전에 장내 방송을 통해 안내하며 투표는 배부받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는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고 무효투표에 관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다. 투표 종료 후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실시하여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유효투표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다.

사. 후보자 소견발표

- 위 원 장 : 후보자 소견발표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임말시아 후보와 고치환 후보에게 순서대로 소견발표를 해달라고 하다.
- 임말시아 후보, 고치환 후보 소견발표를 하다.
- 위 원 장 : 소견발표를 끝마친 임말시아 후보와 고치환 후보에게 수고했다고 하고 소견발표가 끝났음을 선언하다.

아. 투표진행 및 종료

- 위 원 장 :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원, 투개표 참관인 들은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각 담당장소에 대기하여 투표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다.
- 위 원 장 : 투표소 준비와 선거관리위원, 선거사무원, 투개표 참관인들의 준비상황을 확인한 후 17:24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회장 선임을 위한 투표개시를 선언하다.
- 회원들 투표하다.
- 위 원 장 : 투표개시선언 1시간이 경과한 18:24이 되자 투표종료를 선언하며, 선거 사무원과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개표 준비를 지시하다.
- 위 원 장 : 회의장 무대 위에 개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표 실시를 선언하다.
-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진행하다.

- 위 원 장 : 개표가 완료됨을 선언한 후 개표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선거인 수 183명 중 투표자수는 166명으로 후보자별 득표수는 기호 1번 고치환 후보 131표, 기호 2번 임말시아 후보 33표, 무효표 2표라고 하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기호 1번 고치환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당선증 전달

-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치환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다.

아. 당선자 인사

- 고치환 당선자 :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해주신 회원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오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수고해주신 이연봉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협의회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임말시아 후보님과 임말시아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다. 앞으로 지역 사회복지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협의회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제주 사회복지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하며 여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하다.

- 위 원 장 : 회장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회의진행은 부회장 의장이 진행한다고 하다.

아. 부회장 및 이사, 감사 인준

- 의 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주신 이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치환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하다.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은 후 총회에서 2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경우 오늘 이 자리에서 선임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회장당선자가 협의회 발전에 기여해 주실 분을 찾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다음번 총회에서 추천하여 인준받는 것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 회원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부회장과 이사는 다음번 총회에서 추천하여 인준받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다.

- 의 장 : 그럼 감사선임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회원들의 의견을 묻다.

- 강규진 회원 : 규정대로 회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다.

- 회원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감사로 적합한 회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다.

- 윤보철 회원 : 제주은행 지정장출신으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창립할 때 발기인으로도 참여해 주셨고 또한 전 아라중합사회복지관을 역임하신 고두승 회원을 추천한다고 하다.

- 이재문 회원 : 소망요양원 고경애 회원을 추천하다.

- 강규진 회원 : 현재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은정 회원을 추천하다.

- 임애덕 회원 :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나 규정상 감사는 회계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가능하면 회계관련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면 좋을것 같다고 하다.

- 의 장 : 물론 임애덕 회원 의견처럼 회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분으로 감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현재 회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하고 가급적 추천할 때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다.

- 고태언 회원 : 현재 추천을 받은 고두승 회원이나 고경애 회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 경력이나 회계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감사로 선임하는것에 동의하다. 양은정 회원의 경우는 현재 여성경제인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을것 같다고 하다.

- 양은정 회원 : 추천해주신 강규진 회원께서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현재 여건상 감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감사후보 추천을 거절하겠다고 한다.

- 의 장 : 양은정 회원이 감사후보 추천을 거절했다고 하며 나머지 고두승 회원과 고경애 회원에 대한 감사후부 추천에 대한 승낙여부를 묻다.

- 고두승 회원과 고경애 회원 승낙하다.

- 의 장 : 더 이상 추가로 추천할 회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 고두승 회원과 고경애 회원 2명만이 감사로 추천되었다며 이견이 없으면 고두승 회원과 고경애 회원을 감사로 선임하는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다.

- 회원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고두승 회원과 고경애 회원을 감사로 선임한다고 선언하다.

8. 회의록 서명회원 지정

- 의 장 : 정관 제23조 규정에 의거 오늘 개최한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에 서명할 회원으로 조성태, 강지영, 고성도, 임애덕, 김성자, 김호성, 김수완, 박영식, 안근보, 홍연숙 회원을 지명하니 모든 회원들 “예”라고 대답하여 동의하다.

9. 폐 회

- 의 장 :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김재익 회원 : 폐회를 동의하다.

- 회원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6년도 제1차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9:00)

2016년 12월 6일

회장직무대행 : 부 형 총

선거관리위원장 : 이 연 봉

회 원 : 조 성 태

강 지 영

고 성 도

임 애 덕

김 성 자

김 호 성

김 수 완

박 영 선

안 근 복

홍 연 숙

확 인 자 : 고 경 윤

기 록 : 김 성 권